

(우)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33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1/ 전송(02)796-4487  
정책국 국장 최윤배[6530] 법제팀장 이성민[6553] 팀원 윤영섭[6541]/ E-mail : ysup86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 711 - 1806 호  
시행일자 2017. 2. 21.  
수 신 수신처 참조  
참 조  
제 목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안내

1.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, 보건의료정책과-1770 (2017. 2. 20.)

3. 상기 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. 3. 1. 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령(의료인 등의 명찰착용)과 관련하여 명찰착용 준비기간 안내 등 우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바,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의료법 개정(2016. 5. 29.)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,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·감독하여야 하며, 개정된 동 법률 및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(대통령령)이 2017. 3. 1. 시행될 예정임

나. 다만, 시행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(제2조의2제2항)하고 있는바, 보건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임

다.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가 공포되고,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지자체에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해주시를 요청(2017.02.21.)하였음

# 붙임 : 1) 보건복지부, 보건의료정책과-1770 (2017. 2. 20.) 1부.

2)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 주요개정 사항 안내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# 수신처 : 16개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, 대한공중보건협회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, 대한공공의학회장, 군진의학회장